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 윤규석(경매6계)
건명	윤상노 소유물건 (2024타경2901)
감정서번호	가람 1624-07-25016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KAARAM APPRAISAL CO., LTD.
TEL:041)592-6888 FAX:041)592-6891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지사장 김 건 호

(인)

감정평가액	칠억사천사백구십육만오천원정(₩744,965,0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 윤규석	감정평가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경매6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윤상노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07.26	2024.07.26	2024.07.30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원/㎡)	금액(원)
	토지	7,246	토지	7,246	-	744,965,000
		이	하	여	백	
합계						₩744,965,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 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소재 '어은돌해수욕장'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출을 위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기호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개별공시지가 (원/㎡)
1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09	1,241	임야	보전관리	토지임야	8,070
2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11	925	임야	보전관리	토지임야	7,590
3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16	586	임야	보전관리	토지임야	7,590
4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17	586	임야	보전관리	토지임야	7,590
5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18	452	임야	보전관리	현황도로	8,070
6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24	1,200	임야	보전관리	토지임야, 현황도로	7,750
7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25	899	임야	보전관리	토지임야, 현황도로	8,070
8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26	937	임야	보전관리	토지임야, 현황도로	10,300
9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28	420	임야	보전관리	토지임야	10,400
합계		7,24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7월 26일임.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 건은 2024년 7월 26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감정평가의 조건

없음.

5. 참고사항

가. 본 건 기호5~8 토지 일부 및 전부를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지목과 현황이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바, 현황대로 평가하되 지목에 따른 가격을 후첨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교란에 병기하였으며, 지상 일부의 입목은 거래관행상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적절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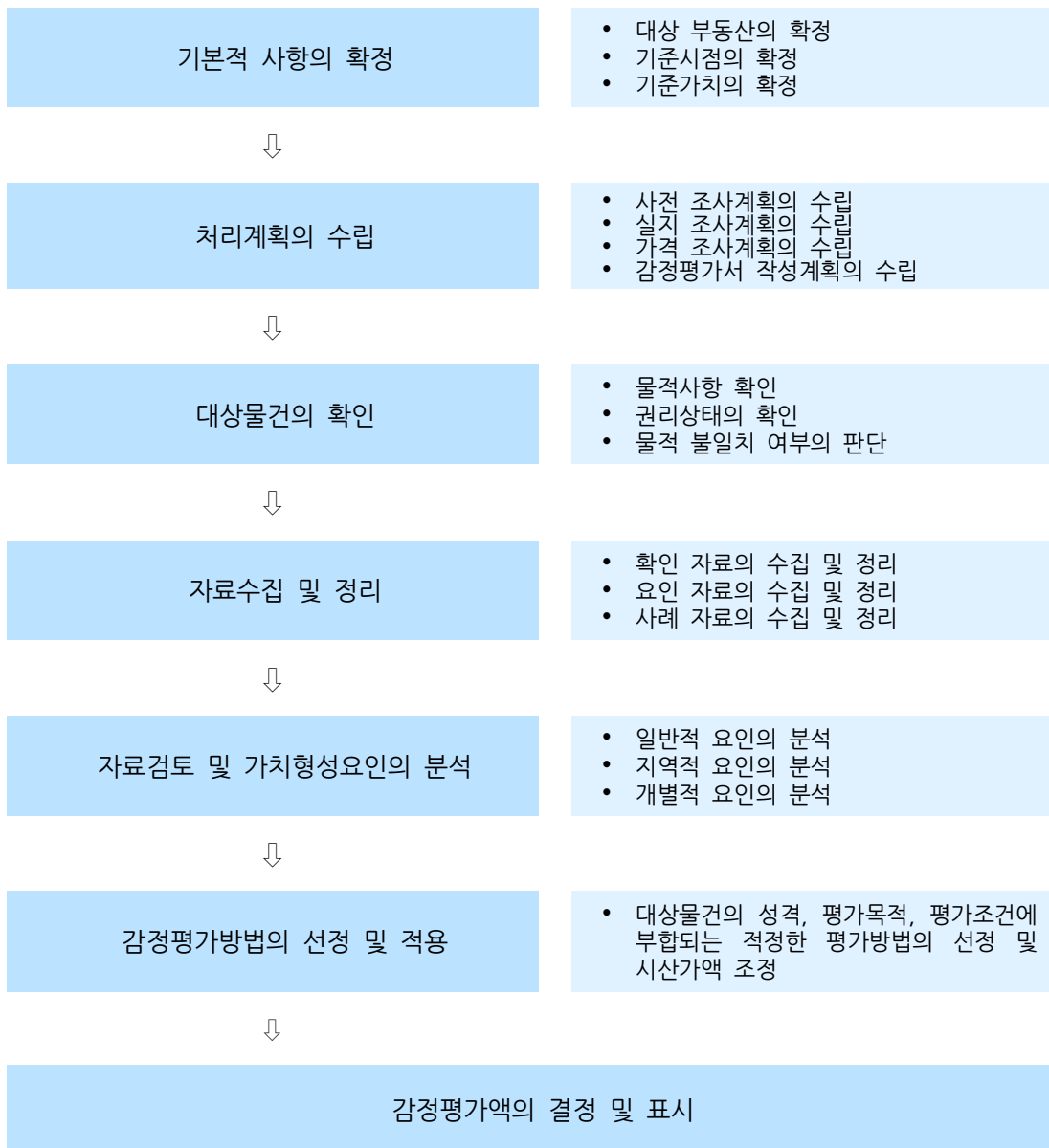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 건의 토지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1. 인근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건물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실거래가액 (원)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1	송현리 637-29	임야	410	보전관리 자연림	부정형 세로(가)	2023.11.26	48,000,000	117,073
			-			-		5,170
비고	사례는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	파도리 120-16	전	496	생산관리 전	사다리 세로(가)	2023.12.28	80,000,000	161,290
			-			-		19,100
비고	사례는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3	파도리 543-612	임야	961	보전관리 토지임야	사다리 세로(불)	2019.06.03	110,000,000	114,464
			-			-		7,420
비고	사례는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 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해당 자료의 출처를 기준하였음.

2. 인근 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 조건	토지단가 (원/㎡)	기준 시점	평가 목적	기준시점 개별공시지가 (원/㎡)
#ㄱ	송현리 637-19	임야	3,305	보전관리 자연림	맹지	39,000	2023.02.01	경매	5,070
#ㄴ	송현리 642-1	임야	4,148	계획관리 공업용	세로 (가)	147,000	2024.07.03	경매	23,700
#ㄷ	정죽리 169-29	임야	3,404	보전관리 토지임야	세로 (가)	118,000	2020.01.17	경매	1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로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공시기준일: 2024년 1월 1일)

비교 표준지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조건	형상 지세	표준지 공시지가 (원/㎡)
A	파도리 산 191	5,238	임야	자연림	보전관리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지	7,690

나.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과 기준시점이 시간적인 불일치로 인하여 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는 절차로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비교 표준지	시·군·구 (산정기간)	용도 지역	시점 수정치	비고
A	충청남도 태안군 (2024.01.01~2024.07.26)	보전관리	0.226% (1.00226)	충청남도 태안군 (24.01.01~24.07.26) (보전관리) 2024.01.01 ~ 2024.06.30 : 0.206 2024.06.01 ~ 2024.06.30 : 0.023 (1 + 0.00206) * (1 + 0.00023 * 26/30) ≒ 1.00226

※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지역요인의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개별요인의 비교

■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임야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인근 역과의 접근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등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 규제 등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의 비교치

본건 기호	비교 표준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9	A	1.00	2.36	1.00	1.00	2.360
2~4	A	1.00	2.95	1.00	1.00	2.950
5	A	1.00	2.36	1.00	0.33	0.779
6	A	1.00	2.36	1.00	0.96	2.266
7,8	A	1.00	2.36	1.00	0.94	2.218
결정의견		기호(1,2~4,9):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지세 등 자연조건에서 우세함. 기호(5~8):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이용상황 등 기타조건에서 열세하나, 지세 등 자연조건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 1991.12.28), 대법원판례 (98두6067(1998.7.10), 92누16300(1993.9.1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매매사례, 평가전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가) 비교사례의 선정

본건 기호	표준지 기호	비교사례 선정
1~9	A	# ㄱ

■ 선정 사유

인근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평가가격 및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건과 비교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음.

■ 선정된 비교사례

선정된 비교사례는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조건 또는 기준가치 등이 해당 감정평가와 유사하고, 기준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감정평가된 사례임.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 조건	토지단가 (원/㎡)	기준 시점	평가 목적	기준시점 개별공시지가 (원/㎡)
# ㄱ	송현리 637-19	임야	3,305	보전관리 자연림	맹지	39,000	2023.02.01	경매	5,07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비교사례 기준 표준지가액과 기준시점 표준지가액의 격차율 산정

■ 표준지 A / 비교사례 #ㄱ

비교사례	구분	사례단가(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①/②)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원/㎡)					
#ㄱ	① 사례기준 표준지가액	39,000	1.00538	1.000	1.100	43,131	5.596
A	② 기준시점 표준지가액	7,690	1.00226	-	-	7,707	

비교사례 기준가액 산출근거	사정보정	-						
	시점수정	충청남도 태안군(2023.02.01 ~ 2024.07.26) 보전관리지역 지가변동을 적용함.						
	지역요인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개별요인	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교통의 편부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	1.10	1.00	-	1.00	1.00	1.100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비교사례를 종합분석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거래동향, 거래사례, 평가전례, 공시지가의 현실화정도, 지역의 개발정도 및 주위환경의 변화, 기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성 및 타당성이 있는 가격에 접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음.

본건 기호	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9	A	5.5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text{시산가액(원/㎡)} = \text{표준지 공시지가(원/㎡)}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times \text{그 밖의 요인}$$

기호	비교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시산가액 (원/㎡)
1,9	A	7,690	1.00226	1.000	2.360	5.59	101,679	102,000
2~4	A	7,690	1.00226	1.000	2.950	5.59	127,099	127,000
5	A	7,690	1.00226	1.000	0.779	5.59	33,563	34,000
6	A	7,690	1.00226	1.000	2.266	5.59	97,629	98,000
7,8	A	7,690	1.00226	1.000	2.218	5.59	95,561	9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

가. 비교사례의 선정

■ 비교사례 선정 및 그 사유

대상과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으며, 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본건 기호	비교사례 선정
1~9	#1

■ 선정된 비교사례

선정된 비교사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이고, 기준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이며,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임.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건물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실거래가액 (원)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1	송현리 637-29	임야	410	보전관리 자연림	부정형 세로(가)	2023.11.26	48,000,000	117,073
			-			-		5,170
비고	사례는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결정의견	본 비교사례는 실지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사정보정치	1.000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 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비교 사례	시·군·구 (산정기간)	용도 지역	시점 수정치	비고
#1	충청남도 태안군 (2023.11.26~2024.07.26)	보전관리	0.329% (1.00329)	충청남도 태안군 (23.11.26~24.07.26) (보전관리) 2023.11.01 ~ 2023.11.30 : 0.116 2023.12.01 ~ 2023.12.31 : 0.083 2024.01.01 ~ 2024.06.30 : 0.206 2024.06.01 ~ 2024.06.30 : 0.023 $(1 + 0.00116 * 5/30) * (1 + 0.00083) * (1 + 0.00206) * (1 + 0.00023 * 26/30) \approx 1.00329$

※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라.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임야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인근 역과의 접근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등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 규제 등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의 비교치

본건 기호	비교 사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9	#1	0.98	0.90	1.00	1.00	0.882
2~4	#1	0.98	1.12	1.00	1.00	1.098
5	#1	0.98	0.90	1.00	0.33	0.291
6	#1	0.98	0.90	1.00	0.96	0.847
7,8	#1	0.98	0.90	1.00	0.94	0.829
결정의견		기호(1,9): 본 건은 비교사례 대비 교통의 편부 등 접근조건 및 지세 등 자연조건에서 열세함. 기호(2~4): 본 건은 비교사례 대비 교통의 편부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나, 지세 등 자연조건에서 우세함. 기호(5~8): 본 건은 비교사례 대비 교통의 편부 등 접근조건 및 지세 등 자연조건, 이용상황 등 기타조건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text{토지 시산가액} = \text{사례단가(원/㎡)}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기호	비교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시산가액 (원/㎡)
1,9	#1	117,073	1.000	1.00329	1.000	0.882	103,598	104,000
2~4	#1	117,073	1.000	1.00329	1.000	1.098	128,969	129,000
5	#1	117,073	1.000	1.00329	1.000	0.291	34,180	34,000
6	#1	117,073	1.000	1.00329	1.000	0.847	99,487	99,000
7,8	#1	117,073	1.000	1.00329	1.000	0.829	97,373	97,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동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 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본건의 평가목적(경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기호	사정면적 (㎡)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결정단가 (원/㎡)	결정된 토지가액 (원)
1,9	1,661	102,000	104,000	102,000	169,422,000
2~4	2,097	127,000	129,000	127,000	266,319,000
5	452	34,000	34,000	34,000	15,368,000
6	1,200	98,000	99,000	98,000	117,600,000
7,8	1,836	96,000	97,000	96,000	176,256,000
합계	7,246				744,965,000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744,965,000	공시지가기준법
합계	744,965,000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m)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09	임야	보전관리지역	1,241.0	1,241	102,000	126,582,000	
2	동 소	543-611	임야	보전관리지역	925.0	925	127,000	117,475,000	
3	동 소	543-616	임야	보전관리지역	586.0	586	127,000	74,422,000	
4	동 소	543-617	임야	보전관리지역	586.0	586	127,000	74,422,000	
5	동 소	543-618	임야	보전관리지역	452.0	452	34,000 (102000)	15,368,000	현황도로 임야일경우: 46,104,000
6	동 소	543-624	임야	보전관리지역	1,200.0	1,200	98,000 (102000)	117,600,000	일부도로감안 임야일경우: 122,400,000
7	동 소	543-625	임야	보전관리지역	899.0	899	96,000 (102000)	86,304,000	일부도로감안 임야일경우: 91,698,000
8	동 소	543-626	임야	보전관리지역	937.0	937	96,000 (102000)	89,952,000	일부도로감안 임야일경우: 95,574,000
9	동 소	543-628	임야	보전관리지역	420.0	420	102,000	42,840,000	
합 계								₩744,965,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소재 '어은돌해수욕장'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펜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의 환경사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 기호2: 대체로 세장형의 환경사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 기호3,4: 가장형의 환경사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 기호5: 부정형의 환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6~8: 대체로 사다리형의 환경사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9: 부정형의 환경사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북서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2~4: 남측 및 북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기호5)에 접함.
- 기호6~8: 남측으로 본 건 일부를 포함하는 폭 약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9: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9):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준보전산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5~8: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부 및 일부를 도로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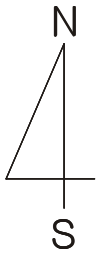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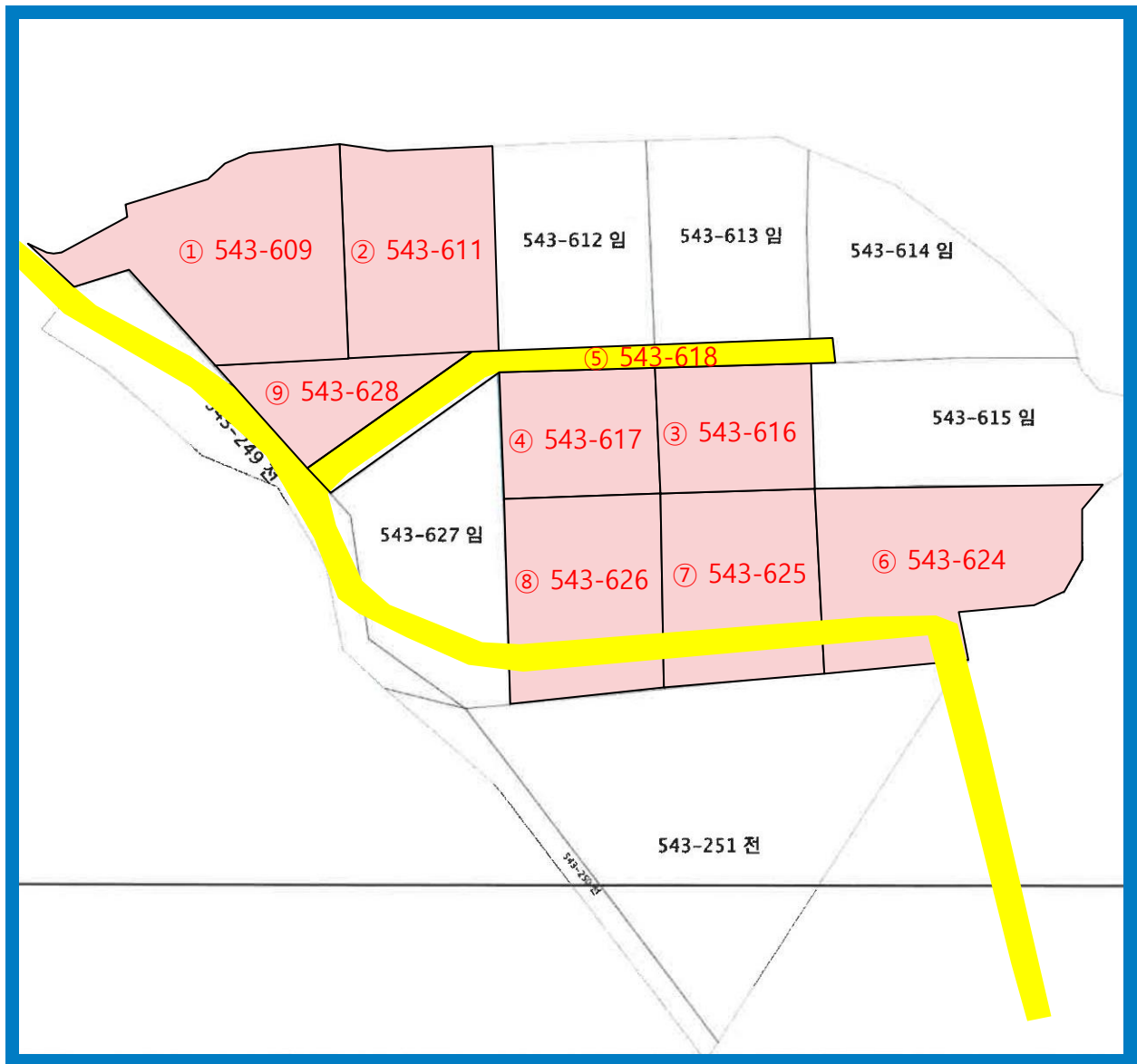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09 외 8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FREE SCALE



표시구분 ■ 본건 ■ 도로

사 진 용 지



[기호 ① 전경]



[기호 ② 전경]

사 진 용 지



[기호 ③,④ 전경]



[기호 ⑤,⑨ 전경]

사 진 용 지



[기호 ⑥ 전경]



[기호 ⑦,⑧ 전경]

사 진 용 지



[주변환경]